

2026년 상반기 안전보건교육 결과 보고

1. 보고 사유

- 아래 근거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안전보건교육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고자 함.
- 제안근거 :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제29조 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
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’ 별표 4 (안전보건교육 과정별 교육시간)

※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

-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·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(안전보건교육 과정별 교육시간)

- ① 정기교육
 - 사무직 종사 근로자 : 매반기 6시간 이상 / 무재해 사업장 3시간
 - 그 외 근로자 : 매 반기 12시간 이상 / 무재해 사업장 6시간

2. 보고 내용

- 교육기간 : ‘26.05.04(월) ~ ‘26.05.31(일)
- 교육내용 :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, 사무실 안전관리 등
- 교육방법 : 공사 스마트캠퍼스(휴넷) 온라인 교육
- 교육결과 : 사무직 근로자 및 현장근로자 6시간 이수 완료

구분	인천항만공사 사무직 및 현장근로자
수강인원	243
수료인원	243
수료율	100%